

## 다. 지하철경찰대 수사실 방문조사(신규)

###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하철수사대 관련 진정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당했다는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지하철경찰대의 수사실이 밀폐된 장소일 뿐 아니라 내부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선 경찰서 수사실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인권침해 예방 차원의 방문조사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하철경찰대별 사건 사례 수집(자료 요구 또는 진정사건에서 발취)
  - 서울지역 지하철경찰대 : 본대(왕십리), 1지구대(종로3가), 2지구대(이수역)의 14개 출장소의 침해사례 수집
- 지하철경찰대 수사실 환경 조사
  - 수사장소의 개방성, 내부 조명 밝기, CCTV 등 설치 여부
- 지하철경찰대의 수사과정 점검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련자료 수집 등	3월까지	
	경찰청 등과 업무협조	4월까지	
2/4분기	조사기관 선정	5월	
3/4분기	방문조사 실시 / 소위보고 등 후속조치	7~9월	

### □ 소요예산 : 약 200만원 소요 예상

- 참가전문가 사례비 / : 80만원(20만원\*2명\*2개소)
- 여비 : 80만원(10만원\*4명\*2개소)
- 업무추진비(전문가, 간담회 등) : 40만원

### □ 성과목표

- 지하철경찰대의 수사실 환경 개선 및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

## 라. 철도공안 수사실 방문조사 (신규)

### □ 추진배경 및 목적

- 인권위 출범이후 일반 수사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등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조사 활동은 미흡
- 특히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철도공안에 대한 점검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철도공안사무소 3개소(부산, 대전, 서울) 실지조사 추진
- 피의자 보호실 등 시설실태 등에 대한 점검
  - 응급진료접근권, 변호인접근권, 가족 등에의 통지 등
  - 심문, 수사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철도공안범죄수사규칙 등 관련규정 점검
- 방문조사를 통한 자체 제도개선 등 정책협의 추진

###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련자료 수집 등	3월까지	
	경찰청/한국철도 등과 업무협조	4월까지	
2/4분기	조사기관 선정	5월	
3/4분기	방문조사 실시 / 소위보고 등 후속조치	7~9월	

### □ 소요예산 : 약 200만원 소요 예상

- 참가전문가 사례비 / : 80만원(20만원\*2명\*2개소)
- 여비 : 80만원(10만원\*4명\*2개소)
- 업무추진비(전문가, 간담회 등) : 40만원

### □ 성과목표

- 특별사법경찰분야 조사 범위 확장 및 노숙자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향상

※ 본사업 성과목표는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부분임

**08년도 업무평가 및 09년 업무계획**

**2008.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2팀**

## 2. 침해구제2팀

---

### □ 2008 팀 사업과제

-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
- 권리구제의 효율성 제고
- 권고결정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
- 직권·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강화
- 교정 관계자와의 업무협력 강화

### □ 총 평

#### 가.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 관련하여

- 구금시설별 전담 조사관 배치, 전담조사관에 의한 구금시설별 인권침해 요인 분석, 조사관별 사건조사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함으로써 미결사건 처리경과일을 평균 83일로 단축하였고, 1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제사건도 우선적으로 모두 처리하는 등 진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평함
-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수용자 1인에 의해 계속·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처리로 인한 조사인력의 낭비가 심했고, 이는 결국신속한 진정사건 처리의 장애물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임

#### 나. 권리구제의 효율성 제고 관련하여

-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가 그 틀을 정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 그리고 「수용자교정·교화등에관한규칙」(법무부장관령)의 제정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법무부 및 구금시설에 권고했던 사항, 국제기준 등이 위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침해구제2팀의 의견이 위 법령에 다수 반영되었음



- 노후되고 협소한 구금시설이 원인된 진정사건은 그 해결방안이 건축물 개조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해 왔으나, 올해는 도시친화 빌딩형 교정시설의 실외운동권 제한 문제, 소거실 과밀수용 문제,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및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 등에 대해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권을 발동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 진정사건 조사결과 27건의 인용결정을 하는 등 수용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함
- 그러나 여전히 진정사건 인용결정율은 1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으므로 수용자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며, 지금까지 법무부 및 구금시설측은 유독 인권침해행위를 한 교도관에 대한 징계권고에 대해서만은 권고를 수용한 적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임

#### 다. 권고결정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

- 교정기관이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을 수용한 후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 위 권고사항을 반영해야만 권리구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임
- 이에 침해구제2팀에서는 매년 그 해에 한 시정권고 사항의 이행여부를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파악해오고 있는 바,
- 올해는 2008. 6월에 법무부 및 교정기관에 대해 한 2007년 방문조사 결과 관련 의견표명 사항과, 2008년에 한 시정권고 사항 중에서 법무부 및 교정기관이 권고수용 의사를 표시한 사항에 대해 실제 일선 교정기관이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확인결과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이었음

#### 라. 직권·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강화

- 진정사건 처리와 더불어 진정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인권사각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가 활성화 되어야 만 수용자 인권보호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할 것인 바,
- 특히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유엔 고등판무관이 10월

둘째 주(2008. 10. 6~10. 12.)를 '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로 지정하고 우리 위원회도 이에 동참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음

-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의 수용환경 및 처우 직권조사, 취사장 관용부 종교집회 참석제한 및 무휴일 작업 직권조사, 열악한 소거실 수용환경에 대한 직권조사, 도시친화 빌딩형 교정시설의 실외운동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하고 법무부 및 구금시설에 대해 시정권고(방문조사는 의견표명)조치를 하였음
- 이번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이 법무부 등에 의해 수용된다면 지금까지는 빌딩형 구금시설 특성상 수용자는 실외운동은 당연히 제한된다는 기존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이고, 향후 빌딩형으로 신·개축되는 빌딩형 구금시설의 운동시설에 관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마. 교정 관계자와의 업무협력 강화

-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은 법무부 및 구금시설이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현실화 되므로 평소 법무부 및 구금시설 당국과 원만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와 2회에 걸쳐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였으며, 또한 조사관과 일선 구금시설 교도관 사이에 서로 상반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사관과 4개 지방교정청 산하 일선 구금시설 교도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총 4회에 걸쳐 개최하였음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법무부 및 구금시설 당국과 큰 마찰이 없었던 것은 위와 같이 서로 이해의 장이 되었던 간담회 등을 개최한 효과로 판단하고 있음

## 가. 사업별 평가

### 1. 장애인 수용자 수용환경 및 처우에 대한 직권조사

#### □ 추진배경 및 목적

- 법무부는 2007년에 안양교도소 등 전국 8개 구금시설을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구금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안양교도소는 1965년 축조된 시설로서 43년이 경과된 대표적인 노후시설임에도 수도권 지역 장애인 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는 시설로 지정됨으로서 2007년 하반기부터 과밀 수용 및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한 진정 및 면전진정신청이 다수 접수되었음.
- 하지만 위 진정이 모두 취하되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교도관들이 다른 사건 실지조사차 교도소를 방문한 조사관에게 장애인 수용자가 법무시설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상회 하여 수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사례가 빈발함.
- 비장애인 수용자의 과밀수용은 구금시설 여건상 흔히 있는 사례이지만, 장애인 수용자가 과밀 수용되는 경우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 오히려 배려 받아야 할 입장인 장애인 수용자가 겪는 인권침해의 정도는 일반수용자에 비해 심각할 수 있으므로 직권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유엔 고등판무관도 10월 둘째 주(2008. 10. 6.~10. 12.)를 '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로 지정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에 동참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본 직권조사를 실시



## □ 주요내용

- 법무부가 특수기능교정시설(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한 8개 시설 뿐만 아니라 전국 47개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서류조사, 실지조사, 장애인 수용자 및 교도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 지체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교도소, 충주구치소, 포항교도소, 김천교도소, 군산교도소, 광주교도소
  - 시각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여주교도소, 청주교도소
  - 언어·청각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 해당 구금시설의 수용밀도 산출, 해당 구금시설의 장애인 수용거실 편의시설 확보 내역 파악하고
- 이것을 근거로 하여 법무부 장관 및 관련 구금시설의 장에게 과밀수용 해소 대책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권고

## □ 성과의 목표

- 기획조사 및 법령·제도 등의 개선

## □ 2008년도 추진 실적

-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 등 수용환경 관련
  -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훈령인 「전국교정시설수용구분등에관한지침」 개정시 장애인 수용자들이 노후화된 시설에서 추위와 과밀수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할 것과, 겨울철 장애부위 찜질 및 체온 유지에 필요한 온수를 충분히 지급할 것과, 장애인 수용거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가 과밀수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



립할 것을 권고하고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 법무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행연습에 필요한 점자블록·점자표시·점자 안내책자·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점자정보단말기·자막 수신기·자막생성보드·화면해설기·독서확대경·광센서 또는 레버식 수도꼭지, 청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청기기·자막 방송시설·외부 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 중계서비스, 지체 장애인 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용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문턱 및 세면대·복도 벽면손잡이·미끄럼 방지 장치·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신체 교정용 신발·바퀴달린 보행기 등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안상 위험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

□ 평가

-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일반 수용자의 수용여건 보다 오히려 열악했던 장애인 수용자의 수용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됨으로서 장애인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권 향상에 기여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2009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일선 구금시설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척이 너무 부진할 경우 법무부 등에 대해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임

## 2. 취사장 관용부 종교집회 참석제한 및 무휴일 작업 등에 대한 직권조사

### □ 추진배경 및 목적

- '구금시설 취사장에 취업한 관용작업 취업자(이하 '취사장 관용부'라 함)가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받고 있으며, 주 1회 휴무일도 없이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요지의 진정 및 면전진정신청건이 22건 이상 접수되었으나, 위 진정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지조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모두 취하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음.
- 그나마 2006년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구금시설측은 취사장 관용부에게 종교집회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취업동의서'를 미리 작성하게 하여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음.
- 그간 다른 사건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 수용자를 탐문한 결과에 의하면, 개별 구금시설의 사정과 취사장 관용부의 인원변동 등으로 인해 취사장 관용부에 대한 종교집회 보장 및 휴무일 보장 문제는 개별 구금시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2조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 구금시설 취사장 관용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고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유엔 고등판무관도 10월 둘째 주 (2008. 10. 6.~10. 12.)를 '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로 지정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에 동참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본 직권조사를 실시

## □ 주요내용

- 전국 48개 구급시설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취사장 관용부 및 교도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이것을 근거로 하여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취사장 관용부에 대해 종교집회 참석 제한 및 무휴작업 실시 여부 확인 및 그 이유
  -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현황 파악
  - 취사장 관용부의 휴무 정도 파악
  - 취사장 관용부·담당 직원 면담조사 등을 통한 자료 수집
  - 취사장 관용부 지원현황 및 취사장 관용부 자격요건
  - 취사장 작업을 3부제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 등

## □ 성과의 목표

- 기획조사 및 법령·제도 등의 개선

## □ 2008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장관에게 시정권고
  - 취사장 관용부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종교집회에 참석을 원할 경우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또는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 취사장 관용부가 취사장 작업의 특성상 완전히 작업을 놓을 수는 없을지라도 보조 작업자나 대체작업자 확보 등을 통하여 순환적으로라도 주 1회 이상 휴무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 평가



-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 집회 참석을 보장하고, 최소한 주 1일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권 향상에 기여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2009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일선 구급시설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법무부 등에 대해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임

### 3. 열악한 소거실 수용환경 등에 대한 직권조사

#### □ 추진배경 및 목적

- 인권위 설립이후 총 63건의 화장실 칸막이관련 진정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인권위가 목포교도소에 화장실 칸막이 설치를 권고한 2003. 2. 10. 이후에도 칸막이가 불완전하다는 내용의 진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태임
- 마산교도소 조사·징벌사동 1.6명 정도의 소거실에 3~4명을 수용하고 있어 과밀수용으로 수용자간 불화, 잠자리 협소 등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2007년도 2건 접수되었고, 공주교도소, 춘천교도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사건이 제기된 바 있음.
- 독거실을 선호하는 수용자 및 조사·징벌자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 거실 부족으로 화장실 출입문도 설치되지 않은 독거실에 2~3인을 수용하거나 2인실에 3~4명을 수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유엔 고등판무관도 10월 둘째 주 (2008. 10. 6.~10. 12.)를 '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로 지정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에 동참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본 직권조사를 실시

#### □ 주요내용

- 구금시설 소거실 중 화장실 문이 없어 2명이상 수용으로 대소변시 수치심을 유발하고 특히, 대변의 경우 냄새 등이 그대로 다른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 소거실에는 쟁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구금시설은 변기 또한 좌변기가 아닌 반수세식 화장실 바닥에서 식기를 세척해야만 하는 비위생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 특히 조사·징벌사동 소거실에 3~4명을 수용함으로써 1인당 절대 공간 부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더우기 취침시에는 문제가 심각해 일명 칼잠을 자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 아래와 같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였음.
  - 조사대상 :
    - 전국 구금시설 소거실의 화장실 문, 싱크대, 과일수용 여부, 특히 조사·징벌사동 소거실 및 환경 열악 구금시설에 중점,
    -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대상시설 선별, 선별된 구금시설에 대해 2차 실지조사
  - 조사방법
    - 서류조사 : 조사·징벌사동 소거실에 대한 거실배치 내역 등 관련 자료 검토
    - 실지조사 대상 구금시설 압축 선정  
(예시 : 기 진정시설, 환경 열악시설, 출입문 미설치 구금시설 등)
  - 실지조사
    - 수용거실 크기 실측,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상황재연 병행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 면담조사 등

#### □ 성과의 목표

- 기획조사 및 법령·제도 등의 개선

#### □ 2008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 하기에 적합하고,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 수용되는 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을 권고
- 단순 입실거부자의 경우 임시 대체거실 수용 등 조사·징벌실 수



용의 대체 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

□ 평가

-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열악한 소거실 수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거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권 등의 향상에 기여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2009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일선 구금시설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법무부 등에 대해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임

## 4. 빌딩형 교정시설의 실외운동 제한 등에 대한 방문조사

### □ 추진배경 및 목적

- 법무부는 1993년 이후 수원구치소 등 6개 교정시설(구치소 5, 교도소 1)을 도시환경에 적합한 빌딩형으로 건축·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도시친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의 실외운동 부족으로 인한 수용자의 진정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진정들은 빌딩형 교정시설이 갖고 있는 운동공간 부족, 이동성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건들이 각하(취하) 또는 기각되어 왔음.
  - 대구(구) 11건, 인천(구) 7건, 수원(구) 5건, 인천(구) 2건 등
- ※ 제13차 침해구제제2소위원회(2008.7.15)에서 방문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
- 법무부는 2009년 이후 교정시설을 신축, 이전 또는 재건축하려는 계획이 2016까지 17개소(신축 6, 이전 10, 재건축 1)에 이르고 있음.
- 교정시설이 완공된 이후 건축물을 변경하거나 재건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축이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용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무부에 사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현재 이들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운동여건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시설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고,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유엔 고등판무관도 10월 둘째 주(2008. 10. 6.~10. 12.)를 '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로 지정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에 동참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본 방문조사를 실시

### □ 주요내용

- 조사대상
  - 도시친화 빌딩형 교정시설, 교정청별 각 2개소(구치소 5, 교도소 1)
    - 서울교정청 :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 대구교정청 : 대구구치소, 울산구치소

○ 조사방법

- 사전 자료검토

- 해당 시설의 수용밀도에 따른 운동 공간 확보 여부
- 운동시설(기구) 비치 내역
- 샤워실, 환풍기, 창문 등 운동 관련 각종 편의시설 현황 등

○ 현장 방문조사

- 수용자 및 관계자 심층 면담조사
- 실제 운동시간 및 이동시간 실측
- 옥상 등 실내운동장 대체 공간
- 문제점 및 대안 모색 등

□ 성과의 목표

- 기획조사 및 법령·제도 등의 개선

□ 2008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장관 및 해당 교정시설에 권고

□ 평가

- 이번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미 건축된 도시친화 빌딩형 구금시설에서의 실외운동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건축 당시 용도가 운동장이었던 옥상을 본래 건물용도와 같이 운동장으로 사용)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향후 빌딩형 구금시설을 신·개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용자의 실외운동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수용자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2009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기히 건축된 빌딩형 구금시설과 신·개축되는 빌딩형 구금시설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법무부 등에 대해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임



## 나. 2009년도 업무계획

1-1-①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한 기획조사 실시

### I. 엄중격리교도소 운영 관련 기획조사

수용자 인권향상 위한 기획조사

####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개정 행형법에 의거 2009년부터 각 교정청(4개청)별로 특이 수용자(상시적인 관규 위반자 등)만을 수용할 목적으로 '엄중격리교도소' 1개소씩을 운영할 예정인 바,
- 특이 수용자만을 수용하는 엄중격리교도소의 특성상 운영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용자의 처우를 제한(부당한 계구사용, 접견금지 등)할 개연성이 크므로,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기획조사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4개 엄중격리교도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교정청별로 교도소 1개소) 실시
- 엄중격리대상 수용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처우(접견·의료 등)제한 내용까지 전 과정을 조사(수용자 및 담당 교도관 심층 면접조사 등)
  - 사전 준비된 체크리스트 위주로 조사하되 현장조사 과정에 필요항목 조정
-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문제점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해결방안 제시
  - 중요한 인권침해 사항은 직권조사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분기	방문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6월	
	방문조사 실행 계획 수립	6월	
	방문조사계획 침해구제제2위원회 상정	7월	
	조사팀(체크리스트, 유의사항 등) 워크숍	7월	
	방문조사 실시	9월	
	방문조사결과보고서 작성	9월	
	방문조사결과에 관한 토론회	10월	
	침해구제제2위원회 상정(의결)	10월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및 교정기관 조사결과 송부	10월	

□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약 850만원
  - 국내여비(조사관 출장비 등) : 약 400만원 소요
  - 외부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및 사례비 등 : 약 300만원 소요
  - 조사관 등의 워크숍 비용 : 150만원 소요

□ 성과목표

- 업중격리 수용자에 대한 필요이상의 과도한 처우제한 행위 사전 예방
- 업중격리 수용시설의 문제점 개선

## II. 진정실 및 보호실 운영 관련 기획조사

###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개정 행형법에 의거 각 교정시설은 2009년부터 행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수용자 조사, 야간에 고성을 발하여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수용자 격리, 기타 흥분상태에 있거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수용자의 격리 등을 위해 '진정실'과 '보호실'을 설치 중에 있고, 동 시설은 2009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바,
- 각 교정시설이 신설된 위 진정실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 흥분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제압함에 있어 폭행을 하거나 필요이상으로 계구를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를 제한할 개연성이 크므로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기획조사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4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교정청별로 교도소 1개소 선정)
  - 인권위 조사관 직접 조사, 관련자료 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 담당 교도관 및 수용자(진정실, 보호실 경험자) 대상으로 심층 면접
  - 사전 준비된 체크리스트 위주로 조사하되 현장조사시 필요 사항 조정
- 조사과정에 확인된 중요한 인권침해사례는 직권조사 추진
- 조사를 통해 수집된 문제점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3/4 분기	방문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8월	
	방문조사 실행 계획 수립	8월	
	조사팀 워크숍(조사요령, 유의사항 등)	9월	
	방문조사 실시	9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10월	
	언론보도자료 배포	10월	



## □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약 650만원
  - 국내여비(조사관 출장비) : 약 400만원 소요
  - 외부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및 사례비 등 : 약 100만원 소요
  - 조사관 등의 위크숍 경비 : 150만원

## □ 성과목표

- 진정실·보호실 인권적 운영을 통한 수용자 인권침해행위 사전 예방
- 진정실·보호실 시설의 문제점 개선

### Ⅲ. 교도관 및 교정시설 관용부에 의한 수용자 개인정보 누출 기획조사

####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교도관과 교정시설 업무(간병·행정·작업) 보조자인 관용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 취득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지불식간에 누설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4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교정청별로 교도소 1개소 선정)
  - 인권위 조사관 직접 조사, 먼저 관련자료 검토한 후 현장에 조사 투입
  - 사전 준비된 체크리스트 위주로 조사하되, 현장사정 감안 조사항목 조정
- 진정사건 조사과정을 통해 수용자로부터 입수한 인권침해사례
  - 교도관이 보라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
  - 간병 관용부의 경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동료 수용자의 질병 관련 정보 누설
  - 행정 관용부는 전자메일 편지 내용, 신분장 기록내용, 영치금액 관련 등 누설
- ※ 개인정보를 누설당한 수용자는 동료 수용자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등의 피해
- 조사과정에 확인된 중요 인권침해사례는 직권조사 추진
-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 분기~ 2/4 분기	방문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2월	
	방문조사 실행 계획 수립	2월	
	조사팀(체크리스트 작성, 유의사항 등)워크숍	4월	
	방문조사 실시	4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5월	
	언론 보도자료 배포		

□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약 700만원
  - 국내여비(조사관 출장비) : 약 400만원 소요
  - 외부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및 사례비 등 : 약 150만원 소요
  - 조사관 워크숍 비용 : 약 150만원 소요

□ 성과목표

- 교도관 및 관용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행위 사전 예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개정 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2008. 12.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입에 수용자 자유권 제한 및 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장관령(시행세칙) 및 법무부훈령 등의 개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시행세칙 등이 인권 퇴보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008년에 이어 기존 법무부시행세칙 및 훈령에 규정된 인권침해적 조항 발굴
- 법무부로부터 개정내용 사전 입수
- 문제된 조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및 인권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 법무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의견 반영 촉구
- 인권위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권고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법무부로부터 개정내용 입수	1월	
	외부전문가 및 인권단체로부터 의견수렴(간담회)	1월	
	법무부와의 정책협의회 개최(정책총괄팀과 공동추진)	2월	
	법무부로부터 개정된 훈령 등 입수	2월	

	<p style="text-align: center;">인권위 의견 미반영된 조항에 대해 정책권고 추진(정책총괄팀과 공동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상반기중</p>	
--	--	---	--

□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약 500만원
  - 외부전문가 등의 회의 참석 수당 및 사례비 : 약 400만원 소요
  - 간담회 개최 경비 : 약 100만원

□ 성과목표

-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 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 사전 예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조사관의 역량은 조사결과보고서와 결정문을 통해 나타나고, 나아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역량의 척도 또한 결정문의 질적 수준을 좌우함
- 현재의 결정문 등의 질적 수준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외·내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사결과보고서 및 결정문 작성 요령 교육
- 질적 수준이 높은 결정문 및 조사결과보고서 수집하여 조사관 활용 강화
- 조사관 사례발표(조사결과보고서 및 결정문 작성, 진정사건 처리 경험 등)
- 추진일정
  - 전문가 초청 교육 : 2월 중 1회
  - 조사관 사례발표 : 분기별 1회

**□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약 50만원
  - 외부전문가 사례비 : 약 50만원

**□ 성과목표**

-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많은 내용을 개정한 개정 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2008. 12.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도관과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 시각차로 인해 갈등 소지
- 이에 일선 교도관과 조사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도소 현장 실무자와 조사관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간담회 추진
- 진정사건 처리과정에 인지된 조사관과 일선 교도관과의 시각차가 있는 사항 정리 및 해결 방안 상호 모색
- 추진일정
  -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

**□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약 160만원
  - 오찬 및 다과(40만원) x 4회 : 약 160만원

**□ 성과목표**

-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 현장 실무자의 인권위 인식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외부 업무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인권단체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무부(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와 간담회 및 정책협의회 개최
- 교정 관련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 교정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 개최
  - 교정학회, 소년보호학회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4/4분기	교정 인권단체 간담회	2월, 5월, 9월	
	법무부 교정국, 인권국, 보호국 간담회	2월, 10월	
	법무부 정책협의회	3월	
	교정 관련 학회 간담회	5월	

□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약 300만원
  - 외부인사 회의참석 수당 및 사례비 : 100만원
  - 오찬 및 다과 등 구입비 : 200만원

□ 성과목표

-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 체계 구축. 끝.

# 2009년 업무계획

2008.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3팀

# 목 차

1. 2008년 사업평가 .....	1
가. 2008년 사업과제 .....	1
나. 총평 .....	1
다. 사업별평가 .....	2
2. 2009년 업무계획 .....	6
가. 업무계획 목차 .....	7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8
다.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	10
라. 정신병원 인권침해 직권조사 .....	12
마.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직권조사 .....	13
사.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결정례집 발간 .....	14
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 .....	15

## 2008년 사업 평가

### □ 2008년 침해구제3팀 사업과제

-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 권리구제 효과성 제고
  - 권고결정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
-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 4개 권역별 정신병원 7개소(국·공립, 민간병원)
  - 통신의 자유 및 작업치료 실태 조사
-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 아동보호치료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 및 인권실태 전반 조사
- 일본 정신보건정책 연수
- 인권교육 및 대외협력
  - 다수인보호시설 등 종사자 인권교육
  - 국가기관, 단체, 언론, 전문가 등 인권보호 관련 정책 및 조사 관련 협력
- 기타
  -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시행 및 침해구제3팀 업무 매뉴얼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시행령 개정안 제출 및 정신보건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장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 및 장차법 시행에 따른 적용법조 검토 보고 등 실시

### □ 총평

- 진정사건의 급증 및 중요사건 지정 등으로 장기미제사건 등 진정사건 처리에 집중한 결과 2007년에 비해 종결건수 및 인용건수가 약 1.8배 이상 크게 증가함.
- 긴급구제조치 요청사건(2건) 및 집단진정 등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권리구제 효과성이 제고되었음.
- 정신보건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9개소를 방문 조사하여 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나 진정사건 처리와 업무 일정 등으로 10월 이후에 조사가 실시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음.
- 2007년에 비해 팀 내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며, 보다 많은 조사관이 참여하는 해외정책연수를 계획하는 등 조사관 역량 강화에 노력함.
- 당초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대외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여 다각적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사건 처리와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사업 이관 등으로 다소 미흡하였음.



□ 사업별 평가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 추진배경 및 목적

- 위원회 구제 절차의 실효성 제고
- 적극적인 대국민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주요내용

-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 권리구제 효과성 제고
- 권고결정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

□ 성과의 목표

- 미결사건 경과일 단축, 평균 사건처리 기간 단축
- 인용·조사중해결 건수, 진정사건 조사 내용의 적정성
- 권고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의 적정성

□ 08년도 추진 실적

연도	접수건수	종결건수	인용				미인용				인당 건수 (월평균)
			소계	권고	고발	기타	소계	기각	각하	기타	
2008년 (1.1~12.3)	526	<b>578</b>	<b>66</b>	56	10	0	512	269	230	13	<b>8.76</b>
2007년 (1.1.~12.3)	447	<b>312</b>	<b>33</b>	22	9	2	279	117	144	18	<b>4.73</b>

□ 평가

- 2007년에 비하여 종결건수가 1.84배 증가(312건→573건)하고 조사관 1인당 월평균 진정사건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4.73건 →8.76건)한 점은 긍정적임.
-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한 진정사건(2건)의 경우 신속하게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집단진정 사건(일맥원)의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병합 처리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함(10.20~10.21.진정, 11.24.소위 결정).
- 2007년에 비하여 인용사건이 1.88배 증가(33건→62건)하여 권리구제의 효과성을 제고되었으나 합의 및 조정의 비중은 적은 편임.
- 분기별로 권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권고수용보고 실시(15차례)하였으나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미흡하며 시설에 직접방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대부분의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실지조사가 필요하고 시설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진정인 및 피해자가 퇴원(소)한 이후 행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속한 진정사건 처리가 어려움.
- 진정인의 특성상 합의종결이 어려워 향후 조사종해결에 대한 성과지표 조정이 필요함.

##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 □ 추진배경 및 목적

-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인권보호에 기여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설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설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 주요내용

- 국·공립병원 3개소, 민간병원 4개소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방문조사 실시
- 특정주제(통신의 자유, 작업치료)에 대한 조사
- 지역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

### □ 성과의 목표

- 정신병원의 **통신의 자유** 및 작업치료에 대한 실태 파악
- 대상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 개선

### □ 08년도 추진 실적

- 일시 : 10.1~10.2, 11.12~11.13, 11.28, 12.1~12.2
- ※ 준비회의 : 9.30(대구지역사무소), 11.30(부산지역사무소)
- 시설 : 서울·경기권 (국립서울병원) / 대구·경북권 (배성병원, 하나병원), 광주·전라권 (영암김병원, 마음사랑병원), 부산·경남권 (경남도립병원, 하동우리들병원)
- 방문조사팀 : 침해구제3팀, 지역사무소, 외부전문가 12명
- 내용 : 시설확인, 입원환자 면담, 간담회 등

### □ 평가

- 특정주제(통신의 자유 및 작업치료)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실시하고 지역사무소와 공동 조사를 통하여 업무의 효과성 제고함.
- 당초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사업과 연계하여 용역기관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목적이 상이하여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

- 진정사건 처리 및 지역사무소의 기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10월 이후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 작성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음.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진정사건(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처리로 인하여 7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부담이 있었으므로 방문조사시 대상시설 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임.
- 기획조사 일정을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 아동보호치료시설 내 인권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정사건이 없어 시설 환경 및 생활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
- 아동 인권보호가 위원회의 중점사업 영역 중 하나로 아동인권프로젝트팀과 협의하여 방문조사 실시 결정

□ 주요내용

- 아동보호치료시설 생활아동의 인권상황 및 시설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

□ 성과의 목표

-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권실태 파악
- 대상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 개선

□ 08년도 추진 실적

- 방문조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22~10.23, 11.5 로템청소년학교(충북 제천), 성바오로학교(경북 군위)
  - 방문조사팀 : 침해구제3팀, 인권연구팀, 외부전문가
- 방문조사 준비회의 및 사전 조사
  - 준비회의 : 5.21, 10. 10
  - 사전 조사 : 6. 11, 10. 17, 10. 31

□ 평가

- 방문조사 실시 전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서울소재) 및 대상시설에 방문하여 기본 정보를 입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킴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향후 방문조사 전 유사시설 및 대상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할 것임.



## 일본 정신보건정책 연수

### □ 추진배경 및 목적

- 일본 정신보건체계와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진정사건 권고시 활용
- 조사관의 조사 역량 강화

### □ 주요내용

- 일본 규슈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병원, 알코올중독치료병원, 재활지원시설) 방문
- 정신보건담당 공무원과 시설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한 보건정책 및 정신질환자 인권상황 파악

### □ 성과의 목표

- 연수과정 및 보고서의 적정성

### □ 08년도 추진 실적

- 일시 및 장소 : 11.11~11.13(2박 3일), 일본 규슈지역 정신병원, 알코올중독자치료시설 등
- 연수자 : 김정학, 손두진, 윤종운, 김찬식, 서원호, 이한선(6명)
- 내용 : 정신병원 시설 확인, 관계자 면담, 자료 수집 등

### □ 평가

- 환율상승으로 예산 관련 연수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현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정대로 완료
- ※ 차량, 통역, 관계기관 방문 등에 대한 지원

###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해외정책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 과목 삭제 되어 사업추진 불가



## 인권교육 및 대외협력

### □ 추진배경 및 목적

-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교육하고 인권감수성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
- 관련 국가기관, 단체, 언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설 정책의 변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 주요내용

- 정책관계자, 시설 종사자와 단체, 언론, 전문가와의 간담회
- 다수인보호시설 등 관계인 인권교육

### □ 성과의 목표

- 협력 및 교육 강화

### □ 08년도 추진 실적

-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 및 경찰 등에 인권교육을 실시(16차례)
- 시설 종사자와의 워크숍, 국가기관(청와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9차례)

### □ 평가

- 유관부처와의 정책협약이 부족하였고 홍보가 미흡함.

###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국가기관과의 협조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

# 업무계획 목차

4-3-④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4-3-⑤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4-1-③	정신병원 인권침해 직권조사
4-1-④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직권조사
4-1-⑥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결정레집 발간
4-1-⑦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

## □ 추진 배경 및 목적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어도 노인들은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인권침해 행위를 용인하거나, 애초에 인권침해 행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함.
-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 현황, 서비스의 질, 인간의 존엄성·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여부 등 시설의 인권침해 행위 정도를 진단하여 당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요소의 즉시 시정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적 함의의 도출을 시도함
-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2개 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3년 만에 실시하는 금번 방문 조사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며 실버(Silver)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인권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 '09년도 방문조사의 주요 내용
  - 「2005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평가지표」와 같이 외부 용역사업을 통해 차후 방문조사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평가지표」(가칭)를 작성
  - 인권평가 지표 마련 시 행정적 기준에 치우친 평가가 아닌 생활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보다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를 탈피할 예정임.
  - 외부 전문가 선정 시 방문조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와 경험은 없지만 노인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자를 선정하여 조사단 내에서 적절한 신·구의 조화를 모색함.
  - 외부 전문가 선정 시 대학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노인복지시설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높이고, 활발한 토의를 통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함.
  - '05년도 방문조사의 경우 해당 시설에 개별 보고서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적절한 Feedback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09년도 방문조사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 권고 및 보도 자료의 작성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개선 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예정임.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권평가지표의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선정	1월	
	외부 용역과 관련한 전문가와의 간담회	2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외부 용역 실시	2월	
2/4분기	방문조사 외부 전문가 선정	6월	
3/4분기	제1차 방문조사 준비회의	7월	
	방문조사 대상 시설 선정	7~8월	
	제2차 방문조사 준비회의	8월	
	방문조사 실시	9월	
4/4분기	방문조사 보고서 완성	10~11월	
	방문조사 결과 보고 및 보도자료 작성	12월	

#### □ 소요예산

- 총소요 : 약 8백만원
  -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외부 용역 : 약 1백만원
  - 회의 수당, 여비 등 기타 사업비 : 약 7백만원

####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인권평가지표의 현실 적합성·실효성
  -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 4-3-②

##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 □ 추진배경 및 목적

-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이 어려워 재범의 가능성이 많아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출소자들의 재사회화와 새 출발을 돕는 갱생보호시설의 역할(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자 개인의 복리도 증진시키는 보호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갱생보호시설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 필요함.
- 이에 갱생보호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실태를 가늠하고 그 문제점을 발굴하여 인권친화적인 시설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를 기획함.

### □ 주요내용 및 추진 계획

-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를 3개년(2009~2011) 시행하고 보고서를 연차별로 수정 보완(대상시설은 연도 별로 한 개씩 차감)
- '09년도 구체적 내용
  -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갱생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문조사의 세부계획 수립
  -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시설점검 목록을 작성하고 대상시설을 선정
  - 시설방문 및 조사
  - 보고서 작성 및 소위상정, 결과 통지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월	
	가이드라인 마련	3월	
2/4분기	간담회 및 준비회의 개최	4월~5월	
	시설점검 목록 작성 및 대상시설 선정	6월	
3/4분기	시설방문 및 조사	7월~8월	
	시설점검 목록 취합 및 통계작업	9월	
4/4분기	보고서 작성 및 소위상정	10월	
	이행방안 도출 및 결과통지	11월	

□ 소요예산

○ 총소요 : 약 650만원

- 여비 : 150만원(3개 시설 서울, 경기, 기타 지역)
- 방문조사 준비 및 결과 회의 수당 : 150만원(10만원\*5인\*3회)
- 원고 및 자문 사례비 : 300만원 (20만원\*3개소\*5인)
- 업무추진비 : 50만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시설점검 목록의 적합성·실효성
-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적정성

### 4-1-③

## 정신병원 인권침해 직권조사

### □ 추진배경 및 목적

- 진정사건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
- 2009. 6.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발표 전 정신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가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정신병원을 조사대상으로 결정하여 직권조사를 실시
- 시설 및 인력기준, 입·퇴원, 행려환자 입원 및 전원조치, 작업치료, 격리·강박, 기타 환자 기본권 제한 실태 여부 등을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중요성 강조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조사 계획 수립, 소위 결정	3월	
2/4분기	직권조사 실시	4월	
	직권조사 보고서 소위상정, 보도자료 발표	5월	

### □ 소요예산

- 총소요 : 약 100만원(여비)

###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기획조사의 적정성
  - 기획조사의 건수

4-1-④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직권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약 2500여 일로 장기입소의 문제가 심각하며 작업치료 명목의 노동력 착취, 폭력, 격리·강박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농후하나 진정이 많지 않음.
- 2009. 6.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발표 전,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발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가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진정사건 등의 조사를 통하여 인권침해가 심각한 정신요양시설을 조사대상으로 결정하여 직권조사를 실시
- 시설 및 인력기준, 입·퇴소, 작업치료, 격리·강박, 폭력, 기타 환자 기본권 제한 실태 여부 등을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의 필요성 및 국가보고서의 중요성 강조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분기	조사 계획 수립, 소위 결정	3~4월	
	직권조사 실시	5월	
	직권조사 보고서 소위상정, 보도자료 발표	6월	

□ 소요예산

- 총소요 : 약 100만원(국내여비)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기획조사의 적정성
  - 기획조사의 건수



4-1-⑤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결정레집 발간

□ 추진배경 및 목적

- 위원회 설립이후 2008년까지의 정신보건시설 관련하여 접수·처리된 1,600여 건(예상)의 진정사건 중 가장 전형적인 사례 및 위원회의 주요 결정이 담긴 결정레집을 발간하고자 함.
-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발표 시점을 일치시켜 국가보고서 사업 및 결정레집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킴.
- 정신보건시설 진정사건 결정레집을 활용하여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간담회 자료로 이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01~'08년 진정사건 통계 현황과 분석 및 주요 결정문을 포함
  - 진정사건에 대하여 접수현황, 처리현황, 진정요지별 유형 분류 등 분석
  - 각 유형별 전형적인 진정사건 결정 소개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분기	정신보건시설 관련 결정레집 발간 계획	1월	
	통계분석 및 주요 결정레 결정	3월~5월	
	결정레집 발간	6월	

□ 소요예산

- 총소요 : 약 350만원
  - 결정레집 인쇄비용: 350만원(약 200쪽, 1,000부)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정신보건시설 진정사건 결정레집 발간·배포
  - 결정레집의 활용도

#### 4-1-⑥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

#### □ 추진배경 및 목적

-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급증 및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종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이 보다 중요해짐.
- 특히,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발표 및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09.3월)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적 실시 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진정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설 종사자와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 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01~'08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접수된 진정사건 분석 및 결정례집('09년 발간 예정), '08~'09년도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진정사건의 유형, 침해사례,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여 정신보건시설 내 입원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시설 종사자와 공동 모색
- '09년도 구체적 내용
  - 3개의 권역별(부산·경남권/대구·경북권/광주·전라권)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 위원회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와 함께 정신보건시설 내 입원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 각 간담회 결과를 정리, 취합하여 공동 선언 보고서의 형태로 모든 참석자 및 정신보건시설에게 배포하고 논의한 인권보호방안의 실천을 촉구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분기	간담회 세부계획 수립 - 담당자 지정, 자료집 제작 등	1월~6월	
3/4분기	간담회 개최	7월~9월 (3개 권역)	
4/4분기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배포	10월	

□ 소요예산

- 총소요 : 약 250만원
- 자료집 제작 및 업무추진비: 약 150만 원
- 장소 임대: 약 100만 원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간담회 계획과 추진내용의 적정성